

충청북도청남대 관리·운영조례
전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행 정 문 화 위 원 회
수석전문위원 손 자 용

충청북도청남대 관리·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회부경위

이 조례안은 2011년 6월 30일 김영주 의원 외 6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7월 7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2. 제안이유

- 청남대는 도소속 기관임에도 민간인 위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주요사항을 심의하게 되어 있는 등 현실에 맞지 않아 이를 폐지하고, 청남대 관광활성화 자문 및 주변지역 주민과의 상생 발전을 위한 자문위원회와 발전협의회를 두도록 하는 등 청남대 운영과정에서 노출된 문제점을 개선·보완하고,
- 승용차 입장 실시, 야간개장 등 청남대 관광활성화 계획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관련 신설하며,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제명을 “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”로 변경

- 운영위원회 삭제(안 제2조)
 - 운영위원회를 폐지하고, 자문위원회 및 발전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함.

- 관람시간 및 매표시간(안 제3조)
 - 매표시간 : 08:30분부터 종료 1시간 30분 전까지
 - 관람시간 :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조정 가능

- 무료입장권(안 제4조제4항)
 - 지역상가 15만원 구입시 무료입장권 2매
→ 10만원 구입시

- 사용료 반환(안 제10조)
 - 사용개시일 전 : 10%를 공제한 잔액
 - 사용개시일 이후 : 사용일 공제 후 잔액
 - 사용일 이후 : 반환신청 불가

- 관람료 징수(안 제12조)
 - 공연, 전시 등에 대한 관람료 징수

- 사무의 위탁(안 제14조)
 - 주차장 운영관리 신설

- 주차료 징수(안 제13조)

구분		당일(1회당 요금)
16인승 이상 승합차		3,000
15인승 이하 승합차		2,000
승용차		2,000
1,000cc 미만 경차		1,000
화물차	1톤초과	3,000
	1톤이하	2,000

-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문구 정비 등
 - 각호 → 각 호, 기타 → 그 밖에 등

4. 검토의견

금번 충청북도청남대 관리·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

청남대가 도소속 기관임에도 민간인 위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주요사항을 심의하게 되어 있는 등 현실에 맞지 않아 이를 폐지하고, 청남대 관광활성화 자문 및 주변지역 주민과의 상생발전을 위한 자문 위원회와 협의회를 두도록 하는 등 청남대 운영과정에서 노출된 문제 점을 개선·보완하고,

승용차 입장 실시, 야간개장 등 청남대 관광활성화 계획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관련 조항을 신설하며,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,

조례개정에 따라 청남대의 관광활성화와 효율적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타당하다고 사료됨.

붙임 : 충청북도청남대 관리·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. 끝.